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저비용·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증하는 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16조(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“운수종사자”라 한다)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운송사업용 전용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</u> <u>2.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</u> <u>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에 적합할 것</u> <u>4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0조제2호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것</u>	<u><삭 제></u>

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2. 사진 2장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자격증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증 정정신청서(전자문서

를 포함한다)에 운전자격증을
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
게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
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
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
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
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
자격증 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
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
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
권자에게 그 재발급을 신청하여
야 한다.

1. 운전자격증(헐어 못 쓰게 된
경우만 해당한다)

2. 사진 2장

제17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
등) 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운
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
와 같다.

<삭 제>